

● 제277회 ●  
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제4차 운영위원회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 토 보 고 서

2017. 12. 18.

운 영 위 원 회  
수 석 전 문 위 원

## 【 김인제 의원 대표발의 】

의안번호 2257

### I. 규칙안 개요

#### 1. 제안자 및 제안경과

- 가. 제안자 : 김인제 의원(찬성자 유동균 의원 외 27명)
- 나. 제안일 : 2017. 11. 13.
- 다. 회부일 : 2017. 11. 14.

####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가. 제안이유

- 현행 규칙 제37조는 5분자유발언을 한 의원에게 따로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하는 규정이 없어 신속하고 원활한 처리결과 파악이 어려움
- 따라서 시장과 교육감으로 하여금 5분자유발언을 한 의원에게 일정한 기간 내에 처리결과를 보고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시장 또는 교육감은 5분자유발언을 한 의원에게 일정한 기간 내에 처리결과를 보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37조제4항 신설)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국회법」,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등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기타사항 : 해당사항 없음.

## II.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박노수)

### 1 개정안의 개요 및 취지

- 본 개정안은 서울특별시 및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단체장”)으로 하여금 5분 자유발언을 한 의원에게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처리 상황과 검토 의견 등을 보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원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도모하고자 제안됨.

### 2 5분자유발언을 한 의원에게 그 처리 결과를 일정 기간 내에 보고 (안 제37조제4항 신설)

- 5분자유발언은 의회가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그 밖에 중요한 관심 사안에 대해 의원이 본회의에서 그 의견을 자유롭게 발언하는 제도임 (「회의규칙」 제37조제1항).
- 특히 상임위원회 중심주의 하에서, 본회의 시정질문이나 안건심의회와 관련한 질의·토론 이외에 시정 전반 등에 관해 의원의 의견을 자유로이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데 그 의미가 있음.
- 제9대 의회 개원 이후 제277회 정례회(2017.11.20일 기준)까지 본회의에서 실시된 5분자유발언은 모두 186회로, 회기당 평균 7.8명의 의원이 본회의 석상을 통해 서울시정과 교육행정, 지역 현안 등에 대해 발언했음.

<표-1> 제9대 의회 회기별 5분자유발언 현황

연도	회기 및 5분자유발언 현황						
	2014	제254회	제255회	제256회	제257회		
2명		-	9명	14명			
2015	제258회	제259회	제260회	제261회	제262회	제263회	제264회
	13명	12명	1명	9명	2명	15명	12명
2016	제265회	제266회	제267회	제268회	제269회	제270회	제271회
	-	6명	9명	10명	-	13명	12명
2017	제272회	제273회	제274회	제275회	제276회	제277회	
	8명	5명	9명	7명	9명	9명	

- 개정안은 5분자유발언을 한 의원에게 일정 기간 내에 그 처리 상황과 검토 의견 등을 보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서울시정 및 현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고자 제안된 것임.

<표-2> 개정안의 주요 내용

현행	개정안
제37조(5분자유발언) ① ~ ③ (생략) <u>&lt;신설&gt;</u>	제37조(5분자유발언)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u>시장 또는 교육감은 의원이 5분자유발언을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해당 의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그 기한 내에 보고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이유와 보고할 수 있는 기한을 서면으로 해당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u>

- 현재 의원의 발언 내용 관련 소관 부서는 5분 자유발언에서 지적·건의된 사안의 사후 조치 결과와 계획을 책자로 제작·제출하고 의정보털 자료실에 등록하는 등의 조치도 함께 수행하고 있음(붙임 참조).
- 그러나 정작 5분자유발언한 의원은 발언 후 오랜 기간이 지났음에도 소관 부서로부터 그 조치 상황이나 향후 계획을 전달받지 못할 우려가 있어 왔음.
- 따라서 5분자유발언에 대한 조치 과정과 처리결과 등을 일정기간 내에 발언 의원에게 보고하도록 규칙상에 명문화함으로써, 5분자유발언 제도의 실효성을 보장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
- 다만 「회의규칙」은 본회의와 상임위원회의 회의 개최와 진행 절차 등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한 의회 내부 규칙인 점을 고려할 때, 단체장에게 보고 의무를 새롭게 부여하는 조문을 「회의규칙」에 포함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회의규칙」은 회의의 운영과 내부규율 등에 관해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회의운영에 관한 내용이 아닌 5분자유발언의 처리결과 보고 의무를 집행부에 부과하는 조항은 회의규칙의 제정 목적에 벗어나는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을 제시했음(붙임 참조).
- 또한 개정안의 내용이 10일 이내에 사후 조치를 모두 완료해야만 하는 것으로 비취질 수 있으므로, 이를 수정해 5분자유발언 후 조치 과정에 대한 설명을 신속하게 전달받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를 살릴 필요가 있음.

<표-3> 신·구조문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37조(5분자유발언)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시장 또는 교육감은 의원이 5분자유발언을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b>처리결과</b> 를 해당 의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그 기한 내에 보고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이유와 보고할 수 있는 기한을 서면으로 해당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7조(5분자유발언) ① ~ ③ (개정안과 같음) ④ ----- ----- <b>그 조치 계획이나 처리결과</b> <b>등을</b> ----- ----- ----- -----

**3 종합 의견**

- 본 개정안은 5분자유발언을 한 의원이 단체장으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처리 상황이나 검토 의견 등을 보고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원활한 의정 활동을 지원하고 서울시정 및 현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제안된 것으로, 그 취지가 타당하다고 보임.
- 다만 「회의규칙」은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한 의회 내부 규칙인바, 단체장에게 보고 의무를 부여하는 조문을 「회의규칙」에 포함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176) 및

## 회의규칙 개정규칙안(2257)에 대한 검토의견

-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50조제1항에서 본회의에서 시정전반 또는 시정의 특정분야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통상 임시회 또는 정례회중 2~3일간 일정으로 개최되고 있음
-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에서 “5분자유발언”을 두어 본회의가 개의되는 경우 의회가 심의중인 안전과 청원 그 밖의 중요한 관심 사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는 “의정활동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의회의 구성과 운영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며(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1조)
-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은 “지방자치법 제7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의 회의운영과 내부규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1조)
  - ※ 지방자치법 제71조(회의규칙) 지방의회는 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 이와 같이 기본 조례는 시의회의 구성과 운영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규정하고, 회의규칙은 회의의 운영과 내부규율 등에 관하여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는 것으로



회의운영에 관한 내용이 아닌 시정질문과 5분자유발언의 처리결과 보고 의무를 집행부에 부과하는 각각의 조항은 기본 조례와 회의규칙의 제정 목적을 벗어나는 것으로 사료됨

- 현재 시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지적된 사안에 대하여는 소관부서에서 사후 조치결과 또는 조치계획을 시정질문 의원에게 설명하고, 이를 종합 정리하여 기획조정실(기획담당관)에서 책자로 제작하여 의원, 전문위원실에 제출하고, 의정포털 자료실에도 등록하는 사후 조치를 수행하고 있음

※ '16년~'17년 9월까지 시정질문 318건(질문의원 75명),  
5분 자유발언 73건(57명) 진행상황의 사후 보고 완료

- 시정질문과 5분자유발언에 대한 추진상황을 현재와 같이 사후 보고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으므로 별도로 기본 조례와 회의규칙에 명문화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를 건의 드림